

제211회 임시회
2003. 4. 17(목)

檢 討 報 告 書

○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증개정조례안

專 門 委 員 林 錫 圭

검 토 보 고 서

- 전문위원 임석규입니다.
- 2003년 4월 2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
-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.
- 먼저,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,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(2002.11.29)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과 일부 조항의 자구를 수정 보완하는 것입니다.
 -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
 -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간 분할 납부하는 경우의 이자율을 연 5내지 8퍼센트에서 연 4내지 6퍼센트로, 5년간 분할 납부하는 경우의 이자율은 연 8퍼센트에서 연 6퍼센트로 각각 인하 조정하며
 - 공유재산의 대부료, 사용료, 매각대금 및 교환차액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료율을 연 15퍼센트에서 연체기간에 따라 연 12에서 15퍼센트까지로 차등화하고, 연체료 부과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 입니다.
 -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다음은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금번 제출된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은
-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(2002.11.29)에 따라 변경된 공유재산

의 대부료 및 사용료를 분할 납부할 경우의 이자율을 인하 조정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이상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